

# 예산총칙

201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09,508,000	6,285,240
일반회계	205,289,000	6,158,670
특별회계	4,219,000	126,570
기타특별회계	4,219,000	126,570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400,000	12,000
주차장특별회계	2,900,000	87,000
수질개선특별회계	605,000	18,150
기반시설특별회계	34,000	1,02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280,000	8,4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"명시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"사고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20,005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는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※ 의존자원 표시

국비→국, 광역·지역발전→광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교부금→특